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1)

김제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을 수용하기 위하여 이미 1989년 12월 15일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의 논의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법제정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루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지침에 따라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런데도 독일법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법에 기한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결국 종래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해결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실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 기본적인 골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는 달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피해자를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독일의 제조물책임법보다 다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을 해석·운용하는데 독일의 논의와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서론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상품의 구조나 결함 유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1960년대 이후 점차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의 2000년 국제지역연구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우리 나라에서는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는데, 종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종래의 전통적인 민법이론으로 구제를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9년 12월 1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가 민법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하다가,¹⁾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을 수용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15일 “결함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을 제정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민사법의 영역에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이 독일의 그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독일의 제조물책임법²⁾과 그 후의 학설·판례의 전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해석과 운용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 법제정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독일의 제조물책임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관하여는 종래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먼저 제조물책임에 관한 종래의 독일법의 전개와 EC지침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을 개관한 다음,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즉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 책임의 주체, 결함의 의미, 개발위험의 항변문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관련 규정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이것은 독일법에 관한 논의가 우리법의 해석에 어떠한 시사를 줄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별개의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1)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의 법상황에 관하여는 한봉희(1983: 79이하) (이 글은 한봉희, 1997: 257 이하에 수록), 연기영(1999: 33이하) 참조.

2) 이 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글로는 우선 이은영·김성천(1990: 32이하) 참조.

II. 독일에서 제조물책임법리의 발달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과

1. 제조물책임법리의 발달

독일에서 20세기초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와 판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제조물책임을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상 담보책임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 그 이론구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1968년 11월 26일 독일 연방대법원판결(닭페스트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한다(Weick, 1987: 75ff.; Taschner/Frietsch, 1990: 32ff.). 이 사건에서 농부가 자기의 닭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혈청이 세균에 오염되어 대부분의 닭이 폐사하였다. 농부는 백신 제조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제조자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혈청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제조자가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BGHZ 51, 91; Taschner/Frietsch, 1990: 35).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을 계약상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후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리가 정착되었다. 이것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지시상의 결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결함에 적용된다. 처음에는 대량 생산의 경우에만 이러한 입증책임을 전환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중소 기업에도 입증책임을 전환을 인정하였다(BGHZ 116, 104). 따라서 제조자는 피해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BGHZ 104, 323; BGH NJW 1995, 2162) 제조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Coester-Waltjen, 김재형 역, 2001: 87).

그리고 독일의 판례는 제조물관찰의무를 인정하여 제조자에게 제조물과 그 효능을 관찰할 의무가 있고(BGHZ 80, 186; BGHZ 116, 60). 제조물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다(BGHZ 99, 167)고 한다. 제조물을 유통시킨 이후에 위험이 가시화되었거나 제조자가 이를 알게된 경우, 제조자는 결함제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 있는 부분이 동일 제품의 다른 분리가능한 부분을 손상시킨 경우(BGHZ 67, 359) 또는 결함 있는 제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BGHZ 117, 183)에도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여 제조물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2. 독일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과

제조물책임법은 특히 미국의 판례법을 통하여 발전하였는데, 유럽연합은 1968년부터 유럽공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율을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터어키 항공기 추락사건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Taschner/Frietsch, 1990: 90ff.). 각료이사회가 ‘결합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이하 EC지침)을 제정하였는데,³⁾ 이에 의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1988년 7월 3일까지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법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 어떤 형태로, 어떤 수단으로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⁴⁾ 특히 이 EC 지침에는 회원국에게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는 선택조항이 있다. 첫째, 농업, 수렵의 1차생산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둘째, 개발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셋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책임최고액의 설정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법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⁵⁾

독일에서는 이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1987년 3월 제조물책임법 초안이 나왔고, 1988년 2월 23일 정부안이 결정되었으며, 1989년 12월 15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⁶⁾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이후에도 민법의 법리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양자가 병존하고 있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5조 제2항).⁷⁾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은 1992년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지침(92/59/EEC)을 제정하였고, 독일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1997년에 제조물안전법⁸⁾을 제정하였다.

3) Richtlinie des Rates vom 25. 7. 1985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85/374/EEC). 이를 소개한 것으로는 한봉희(1997: 131 이하, 597 이하) 참조.

4) 그 후 회원국들의 입법동향에 관하여는 김민중(1994: 71) 참조.

5) 상세한 것은 Hohloch(1994: 426, 431ff.) 참조.

6) 입법경위에 관하여는 Taschner/Frietsch(1990: 19ff.) 참조.

7) 회원국들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는 Hohloch(1994: 428f.) 참조.

8) 이 제조물안전법은 대체로 공법적 성격을 갖는데, 제품이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제품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이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행정당국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독일 민법 제839조, 독일 기본법 제34조). 제조자가 제조물안전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

III. 독일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무과실책임의 원칙

독일민법상 제조물책임에서는 1968년 닭페스트 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판결 이래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제조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아가 독일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위험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 즉,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 또는 물건이 손상된 경우, 제조자는 피해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위험책임(Larenz/Canaris, 1994: 644; Marburger, 1992: 10ff.; Taschner, 1986: 611f.) 또는 무과실책임(v. Westphalen, 1990: 85; Schlechtriem, 1991: 554ff.)이라고 파악하지만, 과실책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⁹⁾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을 해석할 때 가급적 EC지침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EC지침과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1조 제1항에서 고의와 과실이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 제1조 제2항에서 책임배제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5호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제조자가 피용자를 선임, 감독하는데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1 Rn. 3; Erman-Schiemann, 2000. § 1 Rn. 1).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책임면제사유는 제조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제1조 제4항). 이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조물이 유통 당시에 이미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조물이 유통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제1조 제4항 2문, 제1조 제2항 제2호).

9) 최근의 학설상황에 관하여는 우선 MünchKomm-Cahn(1997. § 1 Rn. 2) 참조.

2. 제조물의 개념

(1) 동산과 전기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문은 제조물의 개념을 모든 동산과 전기라고 정의한다.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제조물에 해당한다.¹⁰⁾ 제조물의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량생산물과 수공업제품, 소비재와 생산재 모두 제조물에 포함된다. 토지와 건물 자체는 제조물에 속하지 않지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동산, 예컨대 건축자재 등은 제조물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기름, 가스, 물과 원격난방도 동산에 해당한다(Erman-Schiemann, 2000. § 2 Rn. 2; MünchKomm-Cahn, 1997. § 2 Rn. 5; Honsell, 1995: 211). 전기공급을 중단한 경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부정설은 결합 있는 제조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Staudinger-Oechsler, 1998. § 2 Rn. 37). 혈액이나 장기는 제2조의 제조물에 포함되는데, 제조자는 기증자가 아니라 혈액이나 장기은행이다. 그러나 혈장에 기한 의약품은 약사법(AMG) 제84조, 제조물책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Honsell, 1995: 212).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률규정에 따르면 물건만이 제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taudinger-Oechsler, 1998. § 2 Rn. 64ff.; Cahn, 1996: 2901). 제조물이 이용 후에 쓰레기로 되더라도 제조물이라는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Erman-Schiemann, 2000. § 2 Rn. 3; MünchKomm-Cahn, 1997. § 2 Rn. 14). 물론 유통시에 결합이 없었다면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된다.

(2) 자연생산물

일차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농업적 자연생산물)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렵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2조 제2문). 따라서 이러한 자연생산물의 경우에는 일차적 가공을 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¹¹⁾ 그러나 법률규정에는 일차적 가공에 관하여 더 이상 상세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일차적 가공을 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¹²⁾

10)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제2조 제1호)도 제조물의 개념을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11)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생산물이 가공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연생산물을 1차적으로 가공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1차 가공자가 최종생산물
 물의 제조자이다. 예컨대 방앗간 주인, 포도주 주조업자, 양봉업자는 밀가루, 포
 도주나 꿀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진다. 냉동보관이나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반하여 산림업은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
 래 등 철거의 부산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Erman-Schiemann, 2000. § 2 Rn.
 3).

3. 제조물의 결함

(1) 결함 개념의 의미와 내용

제조물의 결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1조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종래 독일 민법의 해
 석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었는데,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한 사람은 거래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조
 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서 책임을 도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불법
 행위법상의 거래안전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
 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Wieckhorst, 1995: 1009ff.).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근거를 일정한 물건의 제조
 자라는 점이 아니라, 결함 있는 물건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행위에 두고 있기 때
 문에, 제조물책임이 행위책임(Handlungshaftung)에 해당한다고 한다(Larenz/
 Canaris, 1994: 644)

법 제3조는 제조물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이 없으면 결함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결함개념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의 하자 개념과 구별된다. 하자담보책임에서는 주관적 하자
 개념이 통설로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
 우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계약상의 안전성 수준은 객관적인 안전성 기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자와 피해자 사
 이에 계약관계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MünchKomm-Cahn, 1997. § 3 Rn. 2; Erman-Schiemann, 2000. § 3
 Rn. 3).

독일에서 1970년대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결함을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하
 는 경향이 우세하였으나(Diederichsen, 1978: 1284ff.), 통일적인 결함 개념을 입
 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유럽
 공동체지침에 따라 통일적인 결함 개념을 두고 있다.¹³⁾ 이러한 규율방식은 명확

12) 상세한 것은 Buchwaldt(1996: 13) 참조.

13) 이와 달리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인먼트(1997)에서는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유

하지 않고 특히 지시상의 결함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으나(Hübner, 1988: 445), 이 규정의 결함 개념에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이 포섭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제조물관찰의무 또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제조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관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⁴⁾ 제조물의 유통시에 결함이 없으면 나중에 제조물이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 민법 제831조 제1항에 기하여 제조자에게 경고 및 회수의무가 발생한다(MünchKomm-Cahn, 1997. § 3 Rn. 4).

안전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정할 때 일반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물에 대한 전형적인 이용자집단 등의 이성적, 객관적 대표자의 관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Staudinger-Oechler, 1998. § 3 Rn. 15; MünchKomm-Cahn, 1997. § 3 Rn. 5). 법 제3조는 제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기대는 제3조 제1항의 의미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 결함은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점은 특히 지시 의무의 경우에 분명해진다. 즉 일반인은 영업적, 직업적 이용자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Erman-Schiemann, 2000. § 3 Rn. 2).

(2) 개별적 고려요소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불확정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안전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특히 제조물의 표시, 정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용도, 유통시점을 들고 있다(제3조 제1항).

첫째, 제조물이 위험한데도 이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제조물의 형태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광고에 제조물이 일정한 성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손

형을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지시·경고상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다(Restatement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 2).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14) 우리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 규정은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일의 불법행위에 기한 제조물책임에서 인정된 제조물관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가 발생하였으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광고물에 관한 표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책임발생의 요건이다(MünchKomm-Cahn, 1997. § 3 Rn. 13; Staudinger-Oechsler, 1998. § 3 Rn. 45; Erman-Schiemann, 2000. § 3 Rn. 4).

둘째, 결함을 판단할 때 정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제조자가 표시한 용도보다 넓은 개념이다.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이용자가 제조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제조물을 단순히 잘못 사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이를 고려해야 했는데도 이에 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제조물을 남용(Mißbrauch)한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잘못된 사용(Fehlgebrauch)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제조물을 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정당하게 기대된 용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Taschner/Frietsch, 1990: 278; MünchKomm-Cahn, 1997. § 3 Rn. 17f.).

셋째,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할 때 제3조 제1항 c)에서 제조물의 유통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제조물의 유통 이후에 높아지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제1조 제2항 제2, 4, 5호에 따른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정할 때에도 제조물의 유통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3조에서는 제조물의 유통 당시의 안전성기대가 기준이 되지만, 제1조 제2항에서는 결함이 없는 것이 기준이 된다. 손해 발생시에 제조물이 위와 같은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물의 유통시에 이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Erman-Schiemann, 2000. § 3 Rn. 6; MünchKomm-Cahn, 1997. § 3 Rn. 22).

넷째, 제3조 제1항에서 결함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다른 사정, 예컨대 제조물의 가격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값싼 제조물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MünchKomm-Cahn, 1997. § 3 Rn. 23; Staudinger-Oechsler, 1998. § 3 Rn. 88; Erman-Schiemann, 2000. § 3 Rn. 7; Wieckhorst, 1995: 1011).

다섯째, 소비자는 제조자가 안전성에 관한 법규나 기준을 준수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나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도 그 법규가 학문기술 수준에 뒤떨어지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MünchKomm-Cahn, 1997. § 3 Rn. 24; Erman-Schiemann, 2000. § 3 Rn. 7; Wieckhorst, 1995: 1011).

여섯째, 제3조 제2항은 나중에 더 나은 제조물이 유통되더라도 종전에 유통 중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함을 판단할

때 유통시점이 중요하다. 제조자나 그 경쟁자가 나중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든 경우에도 이 사실만으로는 이전에 제조된 물건이 결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Honsell, 1995: 213; Erman-Schiemann, 2000. § 3 Rn. 8).

4. 보호법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이다.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은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소유권의 침해”를 들고 있으나,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서는 “물건의 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물권이나 기대권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점유가 침해된 경우도 포함한다(MünchKomm-Cahn, 1997. § 1 Rn. 5). 그러나 자유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 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상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1 Rn. 7).

한편 물건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법 제1조 제1항 2문에서 두 가지 제한을 하고 있다. 첫째, 결함 있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뿐이고, 제조물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¹⁵⁾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제조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arenz/Canaris, 1994: 646; MünchKomm-Cahn, 1997. § 1 Rn. 9). 둘째,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이어야 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주방기구가 폭발하여 주방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가령 점포에서 그러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직업적으로 이용된 물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배상범위에서 배제된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직업적으로 이용된 물건의 경우에는 특히 높은 후속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EC지침의 제정자가 제조자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스스로 보호수단을 강구할 것을

15) 우리 나라의 판례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공 2000, 192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공 1999, 434). 우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책임에 기한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Lanrenz/Canaris, 1994: 647). 피해자가 자유직업가나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이용하던 물건이 손상되었으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사적인 이용과 영업적 이용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용도로 정해진 것인지, 손상된 물건이 사실상 주로 사적으로 이용되었는지에 따라 제조물책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자가용승용차를 영업상 출장을 가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 물건의 손상시에 우연히 영업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제조물책임이 성립한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는데 영업용차량을 이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Erman-Schiemann, 2000. § 1 Rn. 4)

5. 제조자의 범위

(1) 개설

제조물책임을 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조자¹⁶⁾이다. 제4조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제조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자개념이 확장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쉽게 되어 있다. 독일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지는 범위보다 넓은 면도 있지만, 그보다 좁은 측면도 있다. 제조물을 유통시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업가만이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고, 피용자, 업무집행자나 기관은 제조자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MünchKomm-Cahn, 1997. § 4 Rn. 1). 이와 달리 불법행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피용자 등도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다(MünchKomm-Mertens, 1997. § 823 Rn. 281).

(2) 제조자의 개념

먼저 실제 제조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이 때 제조자는 완성품, 원자재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제4조 제1항 제1문). 원자재를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유럽공동체 지침을 따라 이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제조자가 제품을 혼자서 제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진다. 부품이나 원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최종생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부품이나 원자재의 제조자와 함께 최종생산물의 제조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생산물을 검사하는 사람은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를 제조라는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 우리 제조물책임법(제2조 제2호)은 “제조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판매자의 경우

또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제조물책임을 진다. 즉, 자기 이름이나 상표 또는 다른 인식표시 등을 생산물에서 사용하여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제4조 제1항 제2문).¹⁷⁾ 이를 준제조자라고 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를 제조자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Erman-Schiemann, 2000. § 4 Rn. 4). 예컨대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다른 제조자가 생산한 것에 자신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v. Westphalen, 1990: 89). 그러나 판매자가 제조물을 판매만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준제조자가 아니다.

한편 라이선스계약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 자가 제조자에 해당하고, 라이선스제공자는 법 제4조 1항 2문의 준제조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Staudinger-Oechsler, 1998. § 4 Rn. 32). 생산물을 단순히 포장하는 사람은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는 자는 제조자에 해당한다(Erman-Schiemann, 2000. § 4 Rn. 2).

(4) 수입업자의 경우

법 제4조 제2항은 제조물을 판매 등 영업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 구역에 수입하는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다. 외국에서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데는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제조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수입업자가 프랑스 등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회원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제2조 제3항 가목)과 다른 점으로, 유럽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유럽공동체 내부에서의 권리구제절차는 회원국들의 조약과 지침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므로,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입을 한 경우에만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한편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은 판매나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소비를 목적으로 제조물을 유럽 공동체구역 밖에서 구입해온 경우에는 그가 나중에 이를 판매하더라도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항의 제조물의 개념에는 제1항 제1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품과

17) 우리 제조물책임법(제2조 3호 나목)에서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제조업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재료도 포함된다(Erman-Schiemann, 2000. § 4 Rn. 5).

(5) 공급자의 경우

제조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생산의 경우 또는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책임(Lieferantenhaftung)이 발생한다.¹⁸⁾ 이것은 제조자의 책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1조 2항의 면책사유도 그대로 적용된다(Erman-Schiemann, 2000. § 4 Rn. 6).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급자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 공급자가 자기에게 제품을 인도한 자를 밝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공급자는 청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공급자가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알려준 경우에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다(MünchKomm-Cahn, 1997. § 4 Rn. 22).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공급자는 이 기간 이후에 실제 제조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Erman-Schiemann, 2000. § 4 Rn. 6).

(6) 복수의 배상의무자

제조물 책임을 지는 제조자가 복수인 경우에 그들은 독일민법 제840조와 마찬가지로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¹⁹⁾ 이것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제조자와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나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입업자와 외국의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공급자책임의 경우에는 다른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공급자가 제조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공급

18)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 제1문은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청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제조자 또는 자기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물의 경우 제조자의 성명을 알 수 있으나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업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 제3항 제2문).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19)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5조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제조자가 동시에 손해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들은 연대책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배상의무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그 배상의무와 지급하여야 할 배상의 범위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제반사정, 특히 손해가 주로 어느 의무자에 의하여 얼마만큼 야기되었는가에 따른다. 그밖에 민법 제421조 내지 제425조, 제426조 제1항 제2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제5조)도 배상의무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배상의무자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가 동등한 단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복수의 공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 제1조, 4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지거나 교통사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²⁰⁾ 제조물 책임에 기한 위험책임과 계약상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5 Rn. 2; Erman-Schiemann, 2000. § 5 Rn. 1).

복수의 제조자들이 제조한 제조물들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 어떤 제조물의 결함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량손해에 대하여 모든 잠재적인 손해유발자가 시장지분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인지, 즉 미국의 Market Share Liability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Staudinger-Oechsler, 1998. § 4 Rn. 50ff.). 제5조 제2문은 복수의 배상의무자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제조자의 면책사유

(1) 법 제1조 제2항, 제3항은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²¹⁾ 이것은 항변사유이다.

첫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제1호). 제조자의 의사와 무관한 점유침탈, 예컨대 절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착오, 사기에 의하여 제조물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1 Rn. 19).

둘째,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제2호).²²⁾ 유통과정상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나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러한 피해를 제조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른 면책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은 제조상의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고, 지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MünchKomm-Cahn, 1997. § 1 Rn. 28).

셋째, 제조자가 판매·임대 등 영업적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조한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것이 아닌 경우에도 면책된다(제1

20)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840조가 적용된다.

21)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22) 우리 제조물책임법에는 이를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았으나, 독일의 경우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양창수(2001: 104) 참조.

조 제2항 제3호). 문제된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1 Rn. 37ff.).

넷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서 강제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면책된다(제1조 제2항 제4호). 법률을 준수하였는데도, 그로 인한 결함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이 규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성이 없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규정이 법정책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독일법에서는 일정한 생산방법을 강제하는 강제법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MünchKomm-Cahn, 1997. § 1 Rn. 42ff.).

다섯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된다(제1조 제2항 제5호). 이것은 EC지침의 선택조항에 따라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것인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학지식과 실무경험에 비추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으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통시점 이후에 과학이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그 이전의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MünchKomm-Cahn, 1997. § 1 Rn. 46f.; Erman-Schiemann, 2000. § 1 Rn. 10). 이것은 민법상의 제조물책임과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8년 6월 7일 독일연방대법원판결(BGHZ 104, 323)에서 제조자가 유통시킨 시점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이 판결은 제조자에게 제조물을 유통시키기 전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할 현상보전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결함이 유통시에 존재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조자는 피해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미 제조물의 결함이 유통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6년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제15조 제1항),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고(BGHZ 129, 353, 358f.), 과학, 기술수준에 비추어 결함이 있다고 인식할 수 없는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MünchKomm-Cahn, 1997. § 1 Rn. 48; Erman-Schiemann, 2000. § 1 Rn. 10).

(2) 한편, 부품제조자 등은 최종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을 지기 때문에(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2항에 따라서 면책될 수도 있다.

나아가 부품제조자는 제조물의 설계를 잘못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조자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재료제조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제1조 제3항).

7. 책임경감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경합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254조가 적용된다. 물건이 손괴된 경우,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인 손해배상법에서 독일민법 제254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피해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독일민법 제25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7조 이하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독일민법 제249조 이하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제6조 제1항에서 독일 민법 제254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제254조 제2항 1문도 적용되어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책임이 감경된다(Erman-Schiemann, 2000. § 6 Rn. 1). 제조물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제조자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제조물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3조 1항 b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제조물을 다소 잘못 사용하거나 설명을 무시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책임이 감경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이 감경되는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에서도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MünchKomm-Cahn, 1997. § 6 Rn. 5). 그러나 독일민법에서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관한 제254조 제2항, 제278조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 피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한다(Erman-Schiemann, 2000. § 6 Rn. 2).

(2) 제조물의 결함과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제조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외부관계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는 내부관계에서 제3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2

문).

8. 손해배상의 범위

(1) 사망의 경우

제7조는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치료비, 둘째, 질병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거나, 생계비가 증가함으로써 입은 재산손해(제7조 제1항 1문), 셋째, 매장비용이다. 이 매장비용은 이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2문).

사망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거나 부양의무를 지게 될 관계에 있었고, 사망으로 인하여 제3자의 부양청구권이 없어진 경우, 배상의무자는 사망자가 추정생존기간동안 부양할 의무가 있었던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침해 당시에 제3자가 수태되었으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의무는 발생한다(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민법에 있는 몇몇 규정들을 반복하고 있다. 제7조 제1항 1문은 독일민법 제249조 2문과 비슷하고, 제7조 제1항 2문과 제7조 2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독일민법 제844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다만 독일민법 제845조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장비용이나 부양청구권에 관한 이 규정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깨뜨리고 있다.

(2) 신체침해의 경우

제8조는 독일민법 842조와 유사하게 신체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는 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거나 생계비가 증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정기금에 의한 손해배상

제9조는 제1항은 독일민법 제84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정기금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자의 생계비 증가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은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일민법 제84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4) 위자료 문제

제조물책임법에는 위자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민법상의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독일 민법 제847조).

9. 책임한도액과 자기부담액

우리 나라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자기부담액을 정한 규정도 없으나, 독일 제조물책임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책임한도

독일법에서는 통상 무과실책임이나 위험책임에 대해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12조, 책임법 제9조, 10조, 환경책임법 제15조 등이 이에 속한다. 제조물책임법 제10조 제1항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제조물이나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조물에 의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천만 마르크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것은 제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한도액이 1억 6천만 마르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책임한도액을 둔 것은 원래 제조물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할 책임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도의 위험도 보험기술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10년 후에 책임한도액에 관한 유보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위원회는 지침의 적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잠정적으로 포기하였다(Erman-Schiemann, 2000. § 10 Rn. 1).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할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액을 포함해야 한다. 독일과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책임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법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제10조 제2항). 따라서 모든 채권자가 한도액에서 단지 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의무가 일종의 파산재단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배당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Erman-Schiemann, 2000. § 10 Rn. 3).

(2) 물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담액

물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1,125 마르크까지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제11조). 인적 손해와 반대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최고액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 대신 각각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액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손해가 1,125마르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 부담부분을 정하는 것은 소송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MünchKomm-Cahn, 1997. § 11 Rn. 1; Erman-Schiemann, 2000. § 11 Rn. 1).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금액에 제한이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참조). 독일의 판례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11조의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10. 소멸시효와 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852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기한 청구권은 배상청구권자가 손해, 결함 및 배상의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2조 제1항).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하지만(제852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멸시효는 과실로 손해, 결함 및 배상의무자를 알지 못한 때에도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3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청구권은 유통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법 제13조). 제조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Erman-Schiemann, 2000. § 12 Rn. 1). 한편 배상의무자와 배상청구권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협의의 계속이 거절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12조 제2항).

(2) 청구권의 소멸

법 제13조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유발한 제조물의 유통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3조 제1항 제1문). 당사자가 이에 관한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산점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유통시이므로, 각각의 제조자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간의 진행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고, 품질보증을 이유로 연장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이다(MünchKomm-Cahn, 1997. § 13 Rn. 2; Erman-Schiemann, 2000. § 13 Rn. 1f.).

이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다. 첫째,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절차나 독촉절차가 계속중이면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제13조 제1항 제2문). 둘째,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다른 채무명의(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3조 제2항 1문). 외국에서의 판결에 관하여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독일 민사소송법 제722조, 723조)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판외의 화해를 하거나 계약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명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제13조 제2항 2문).

11. 강행규정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 의무는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제14조). 이 규정은 피해자가 소비자인지, 아니면 영업자인지를 불문한다.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76년의 개정 약사법에서는 사람에게 사용할 의약품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의약품을 유통시킨 기업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제84조). 독일 약사법 제84조와 제조물책임법 제1조의 차이는 개발위험의 항변에 있다. 독일 약사법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에 기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Larenz/Canaris, 1994: 649).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5조 제1항은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조 제2호).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청구권 외에 불법

행위영역에서의 위험책임이나 과실책임에 근거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한도액(제10조)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1,125마르크까지의 피해자의 자기부담금(제11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의 물적 손해에 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계약상의 청구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IV. 결 론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EU의 제조물책임지침에 따라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책임의 주체에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 유사제조업자, 수입업자도 포함되며, 특히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1차 농산물이나 수렵물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독일법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법에서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결국 종래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해결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onsell, 1995: 211; Coester-Waltjen, 김재형 역, 2001: 88).

이와 같이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실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불법행위법은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소비자의 다른 물건에 대한 손해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상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제2호). 셋째, 인신손해의 책임최고한도액을 동일 결함을 가진 제품에 관하여 복수의 피해자가 있어도 총액 1억 6천만 마르크로 한정하였다. 물적 손해의 경우에는 1125마르크까지는 배상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1조). 나아가 이 법은 농업, 어업 또는 수렵으로부터 얻은 자연생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제조물이 이를 시장에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없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은 무과실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판결에서 이 규정은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설계상 결함에 대한 항변만이 허용되고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EC지침을 토대로 한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 기본적인 골격이 유사하다.²³⁾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는 달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피해자를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책임한도액이나 자기부담액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독일의 제조물책임법보다 다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을 해석·운용하는데 독일의 논의와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3) 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는 점은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 마찬가지로이다.

◆ 참고 문헌 ◆

- 김민중. 1994. 「외국(유럽·일본)의 제조물책임입법동향」. 『인권과 정의』. 9월호.
- 양창수. 2001.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법학』. 서울대학교. 제42권 제2호.
- 연기영. 1999.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육서당.
- 이은영·김성천. 1990. 「독일제조물책임법(1989. 12. 15)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0월호.
- 한봉희. 1983. 「독일제조물책임법」. 『법률연구』. 연세대법률문제연구소. 3집.
- _____. 1997.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 Buchwaldt. 1996. "Die erste Verarbeitung landwirtschaftlicher Naturprodukte und Jagderzeugnisse." *NJW*.
- Cahn. 1997.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ProdHaftG).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3. Aufl.
- _____. 1996. "Produkthaftung für verkörperte geistige Leistungen." *NJW*.
- Coester-Waltjen. 김재형 역. 2001. 「유럽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및 약관규제법」. 『법학』. 서울대학교. 제42권 제2호.
- Diederichsen. 1978. "Wohin treibt die Produzentenhaftung?," *NJW*.
- Hohloch. 1994. "Produkthaftung in Europa." *ZEup*.
- Honsell. 1995. "Produkthaftungsgesetz und allgemeine Deliktshaftung." *JuS*.
- Hübner. 1988. "Haftungsproble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 Larenz/Canaris. 1994.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3. Aufl.
- Marburger. 1992. "Grundsatz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ß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zur Umwelthaftung." *AcP* 192.
- Mertens. 1997. BGB § 823.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3. Aufl.
- Oechsler. 1998.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ProdHaftG).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3. Aufl.
- Schiemann. 2000.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ProdHaftG).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10. Aufl.
- Schlechtriem. 1991. "Dogma und Sachfrage Überlegungen zum Fehlerbegriff des Produkthaftungsgesetzes," *Festschrift für Rittner*.
- Taschner. 1986. "Die künftige Produzentenhaftung in Deutschland." *NJW*.
- Taschner/Frietsch. 1990.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2. Aufl.

-
-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8. *Restatement of the Law Torts(Third). Products Liability*
- Weick. 1987. "Haftung für Schädigungen durch Produkte und Produktionsprozesse." Weick(hrg.) *Entwicklung des Deliktsrechts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 v. Westphalen. 1990. "Das neue Produkthaftungsgesetz." *NJW*.
- Wieckhorst. 1995. "Vom Produzentenfehler zum Produktfehler des § 3 Prod-HaftG." *VersR*.

Product Liability Law in Germany

Jae-Hyung Kim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legal theories on product liability have developed slowly through a colloquy between the courts and academic commentators. It was only on 12 January 2000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scheduled to be enforced from 1st July 2002. Meanwhile, in Germany, product liability law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German Product Liability Act of 15 December 1989 has been enforced since 1990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EC Directive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Considering that Korean legal system essentially modeled after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at it was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German law in the area of civil law, and further that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very much similar to that of Germany, exploring the German law on product liability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will offer precious insights into the future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Korea.

This paper looks at the German Product Liability Act and examines the legal situat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with some comparative study with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German Product Liability Act adopted the strict liability for faulty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ECC Directive. However, under the German law, injured parties would rather be pursuing product liability claims under the tort provision of the Civil Code. For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re is only one decision rendered by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on this Act. This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product liability via tort law serves as the more important basis for claims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the inefficiency of the German Product Liability Act in actual court practices owing to the many limitations inherent in the Statute.

In terms of the basic structur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similar to that of the German Product Act, primarily in the sense that the Act does not apply to the damage to the product itself and that the defence of “product development risk” by a producer is allowed. However, unlike the German

Product Liability A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cable to the compensation for immaterial loss as well; the scope of the injured party is not necessarily confined to consumers; and it does not prescribe the limit on the producer's total liability for damages. With the differences in mind,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enacted more or less in a better shape than its German counterpart.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7동 417호.

Tel: (02)880-8234(O). E-mail: kjh8234@snu.ac.kr